

'94년도 정보통신 진흥 지원사업

알고계십니까

'94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지난 2월 2일 체신부 공고)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소개 내용중 일부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이번에는 상공부 보유 정책지원 사업중 금년도 생산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한다.

<편집자 주>

체신부

'94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계획 확정

'94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지난 2월 호에서 안내한 바 있다. 3월호에서는 이중 일부 변경사항을 안내하기로 한다.

* 참고

DB월드 2월호 73페이지 ~ 77페이지

2 '94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

-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의 대상 사업분야로 다음항목 추가
 - 정보화 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H/W, S/W 구입 및 네트워크(LAN, WAN등) 구축
- 용자규모 195억(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 및 국책연구개발 사업 지원부분은 2차에 지원예정(세부내용은 전자통신연구소로 문의)

3. 지원조건

가.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 1) 융자금리 : 년 6.5%
- 2) 융자기간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3) 지원한도
 - 동일인 한도 : 10억원 이내

나.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사업

- 1) 융자금리 : 년 6.5%(중소기업은 년 6.0%)
- 2) 융자기간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 3) 지원한도
 -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
 - 과제당 한도 : 10억원 이내(공동과제는 15)

억원 이내)

4. 지원대상 및 방법

○ 업체별 동시수행 과제수의 범위 삭제

7. 사업계획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사업계획서 6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확인자료) 1부
- 참여 연구인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임금대장 사본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신청년도말의 추정 재무제표 1부(창업기업에 한함)
- 구입기자재 견적서, 금형가공비 및 외주가공비 견적서 각 1부
- 네트워크 구축사업중 도급공사인 경우 도급공사비 견적서 1부
(정보화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사업자 및 참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인정서 사본 1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경우 설립인가서 사본)
- 위탁연구개발인 경우 위탁연구 참여확인서 1부
- 공동연구개발인 경우 공동연구확인서 및 각각 구비서류 1부
- 네트워크 구축사업중 자체시공인 경우 재료비 견적서 1부 (정보화 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사업자 및 참여기업이 유망주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1부

(당해 기관장 또는 세무서장 확인자료)

9. 예비사업자 선정

(단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대출승인 절차가 완료된 예비사업자에게 한한다)부분을 삭제

12. 사후관리

4)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사업기간중 매분기종료 후 10일 이내) 삭제

* 접수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금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 기금관리실

-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1 (우 : 305-350)
전화 : (042) 860-5955, 5956, 5957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오피스 6층
(우 : 137-070)
전화 : (02) 587-7001

* 접수기간 : '94. 2. 14 ~ 3. 10일까지

상 공 자 원 부

생산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은 산업의 공통 애로성과 기반성을 갖는 기술분야로서 기업 단독의 개발이 어려운 분야의 연구개발비 및 시험생산설비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고도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제조업 전 분야)
- 공업발전기금 지원(첨단산업기술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

자 금 명	관리규모 (억원)		'93 지원과제 건수
	'93 지원실적	'94 지원실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887	1,414	446 과제
공업발전기금	400	500	303 과제
계	1,287	1,914	749 과제

☞ 문의처

- 생산기술연구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TEL : 860-1633/7)
기술관리본부 총괄조정과, 기술조사실, 상담실
-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진흥부(산업지원과)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조선일보 2층
(TEL : 725-3751/3, FAX : 725-3750)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목적

공업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한 공통애로 기술과제 또는 시급히 개발해야 할 전략산업 기술개발 분야로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추진 시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1. 지원대상과제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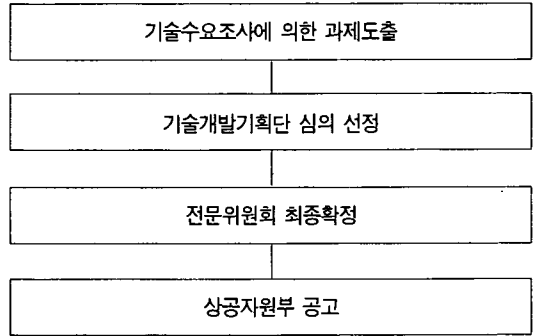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로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
- 당해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수출촉진, 수입대체 또는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등이 매우 높으나, 민간업체 단독에 의한 개발이 어려워져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술과제
- 민간업체가 보유중인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성과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 산·학·연 등과의 공동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기술과제

☞ 관련근거 :

공업발전법 제13조 및 공업발전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2조

2. 대상과제의 고시 및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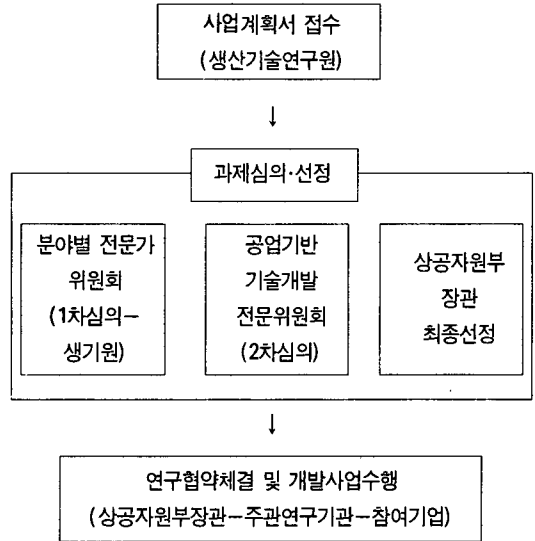
가. 공고절차



나. 공고방법

- 해당 기술과제명은 관보게재 및 주요경제지에 광고 (세부 개발목표 및 기술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배포)

다. 선정절차



라. 개발비 지원범위

- 과제별로 기술성, 개발방법, 참여기업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요개발사업비의 2/3 이내에서 기업참여 형태별로 구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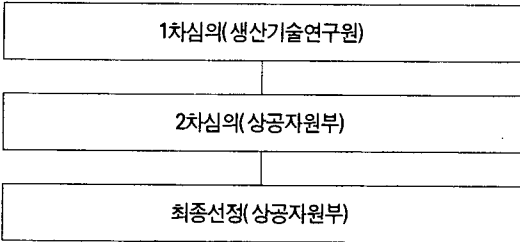
- 우선지원대상
 - 2개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
 -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

마. 과제신청 및 접수

- 개발대상과제에 대하여 약 1개월간 공고후 소정양식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일정기간내에 접수
- 기업의 개별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관기관이 신청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선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주관연구기관이란
 당해 과제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생기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전문회사)

바. 과제심의 및 지원대상 과제선정



사.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비 관리

- 협약체결 당사자 : 상공자원부장관, 주관연구기관장 및 참여기관 대표
- 협약기관 : 1년을 기준으로 하며, 2년이상인 수행과제도 1년 협약기관 종료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정부출연금 지급 : 협약후 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황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참여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중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담(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현물투자 인정)

아. 기타

- 개발결과의 최종평가는 당해 개발사업 종료후 실태조사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수·보통·불량의 3등급으로 평가
- 최종 평가 결과가 우수·보통으로 평가된 과제는 정부출연금 지원액 범위내에서 1~5년 이내에 기술료 징수

* 지난 2월 16일 상공자원부에서 공고한 사업은 2차(3월, 5월)에 걸쳐접수 하여 상반기에 지원하고 '95년도 사업은 '94년 10월경에 공고하여 '95년초에 지원할 예정이다.

● 공업발전기금중 첨단산업기술 개발사업

목 적

상공자원부 고시 제90-26호 및 91-23호에 정한 첨단산업의 업종 및 범위에 해당하는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험생산설비 등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국내 첨단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1. 운영규모 및 조건

- 규모 : 500억원
- 융자조건 : 년 6.5%,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포함)
- 융자한도 : 제한없음
- 융자비용 : 운전 및 시설 소요자금의 각 70%

이내(다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용 기구, 기자재 및 시험생산시설 등 시설자금에 한해서는 100% 이내)

2. 자금 지원대상

- 상공자원부에서 고시한 정밀전자,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항공기산업, 광학산업, 신소재 등 첨단산업의 업종 및 범위에 해당하는 생산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첨단기술의 개발사업

3. 용자 우선사업

- 상공자원부장관이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으로 시행 공고한 과제의 개발사업
- 2개 이상의 업체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4. 지원범위

-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연구 및 위탁연구 개발비(연구인건비, 재료비, 시험검사비, 교육연수비, 기술지도비 등)
- 연구개발용 기구, 기자재 구입비
- 기술도입비
- 외국기술 인증 획득비
- 시험 생산설비의 건설 및 운전비
-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

5. 지원 및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생산기술연구원부설 기술관리본부
- 접수기간 : 주요 일간경제지에 공고(3월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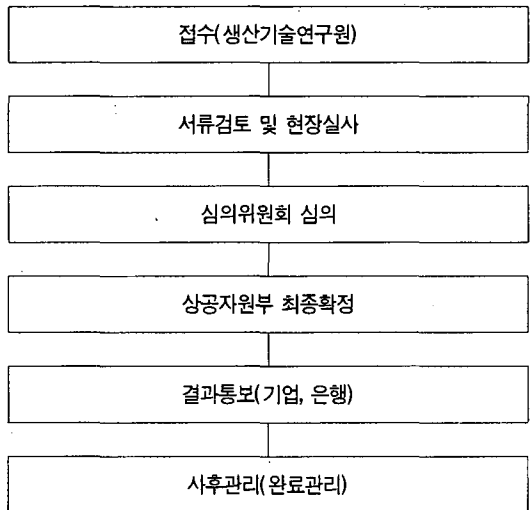
접수 예정)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및 관련 참고자료(접수처에 문의바람)

☞ 문의처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본부 총괄조정과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TEL : (02) 860-1633/7, FAX : (02) 860-1629

6.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및 관리체계



☞ 관련근거

공업발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8조